

# **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**

주식회사 크레스트아시아자산운용

#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0. 4. 20.

### 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수수료 부과 원칙)

-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-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 등”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-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 -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 -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/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수수료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판매수수료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.
  -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#### 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

동 지침은 주식회사 크레스트아시아자산운용(이하 ‘회사’)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보수에 적용된다.

1.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수행과 관련된 운용보수
2. 상기 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

#### 제5조(수수료 부과 기준)

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1.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, 인력 및 비용
2.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
3.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
4.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
5.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, 인력 및 비용
6.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·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
7.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
8. 사모 간접투자기구 수익자 및 일임 고객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

#### 제6조(수수료 결정 절차)

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(위원장: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참석자: 운용, 운용지원, 컴플라이언스, 리스크관리, 마케팅, 세일즈 및 IT 업무 담당 실무자)에서 상품의 특성 및 업무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증권 신고서/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#### 제7조(공시)

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(기타 사항)

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,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,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